



의안번호	제 2010 - 20호
의 결 연 월 일	2010. 11. 22. (제29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1팀 회의	1
1. 제33차 회의	1
가. 일시·장소	1
나. 참석자	1
다. 주요 안건	1
라. 회의 요지	1
2. 제34차 회의	3
가. 일시·장소	3
나. 참석자	3
다. 주요 안건	4
라. 회의 요지	4
II. 2팀 회의	7
1. 제26차 회의	7
가. 일시·장소	7
나. 참석자	7
다. 주요 안건	7
라. 회의 요지	7
2. 제27차 회의	10
가. 일시·장소	10
나. 참석자	10
다. 주요 안건	10
라. 회의 요지	10

III. 전체회의	11
1. 제30차 회의	11
가. 일시·장소	11
나. 참석자	11
다. 주요 안건	12
라. 회의 요지	12
2. 제31차 회의	17
가. 일시·장소	17
나. 참석자	18
다. 주요 안건	18
라. 회의 요지	18
3. 제32차 회의	25
가. 일시·장소	25
나. 참석자	26
다. 주요 안건	26
라. 회의 요지	26
IV. 향후 일정	29
별첨	
정준화,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김현석, “공문서범죄 집행유예기준 검토”	
김현석, “식품·보건범죄 집행유예기준 검토”	
정준화,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검토”	
정준화,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서봉규, “마약범죄군 양형기준초안”	
정준화,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10. 22.자)에 관한 검토 의견”	
홍준호, “사기범죄 양형기준 검토”	

홍준호,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검토”

I. 1팀 회의

1. 제33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10. 20.(수) 15:00 ~ 17:0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김현석(팀장), 범현, 심재철, 조은경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사기,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라. 회의 요지

(1)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 특경법상 사기죄,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를 포함시키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사기미수죄는 포함시키지 않는 데에 의견이 모아짐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재판실무상 보험금사기와 보이스피싱사기의 경우에는 피해금액과 무관하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의견
 - 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일부 범죄는 다른 사기죄와 처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의, 범죄태양과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각 대유형 내에서 피해금액 등의 기타 사항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

- 소유형을 분류할 때 모든 대유형 내에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각 대유형별로 피해금액의 구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
- 각 대유형의 특성별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고,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다는 의견
- 피해금액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 심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부적당하고, 인자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사기죄가 대표적 재산범죄이므로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들어가야 하고, 실질적인 피해액은 인자로서 고려하면 된다는 의견
- 소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여러 개의 대유형에 해당되는 다수범죄의 실제적 경합범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지 않고 피해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 형량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일반사기죄는 횡령배임죄의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하고, 특수한 유형의 사기죄는 그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사기죄는 사문서위조죄와 실제적 경합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문서위조는 사기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별도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필요는 없고, 사기죄에 흡수하여 양형인자로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

(2)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 유형분류 및 설정 대상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사문서범죄는 법정형과 실제 재판사례의 처벌정도가 낮고, 유형도 단순하므로, 공문서범죄의 양형기준처럼 세분화할 필요 없다는 의견
 - 사문서위조죄의 소유형 분류기준에 관해서는, 불법목적 여부로 하자는 의견, 고의의 태양으로 하자는 의견, 소유형 분류 자체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 사문서위조는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되면 사문서위조는 그 양형기준에 흡수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독자적 양형기준의 활용도가 낮을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내에서 소유형을 다시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낮고, 사례도 매우 적으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2. 제34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11. 1.(수) 16:40 ~ 18:1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김현석(팀장), 범현, 심재철,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공문서, 식품·보건범죄의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사기,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라. 회의 요지

(1) 공문서, 식품·보건범죄의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집행유예기준 일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양형인자를 조합해서 그런 경우에는 실형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집행유예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 현행 집행유예기준 방식에서도 2~3개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결합되면 원칙적으로 실형권고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위와 같은 방식이 현행 방식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의견
- 공문서범죄의 집행유예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이 일반참작사유로 되어 있는데 중대한 사항이므로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단독범과 공범이 있을 때, 제시된 방안대로라면 단독범의 책임은 주요참작사유 중 해당사유가 없게 되는 한편 공범 중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조직적 범죄’의 주요참작사유와 ‘주도적 역할’의 일반참작사유가 해당되며, 공범 중 소극적 역할을 한 사람은 주요참작사유 중 ‘조직적 범죄’의 부정적요소와 ‘소극가담’의 긍정적요소가 하나씩 해당되므로, 결국 단독범과 공범 중 소극가담자가 동일한 처리를 받게 되고 공범 중 주도적 가담자가 중하게 처리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

○ 식품·보건범죄의 집행유예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허위표시 유형에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는 주요참작사유로 변경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
- 위 사유는 주요참작사유 중 ‘전문적·조직적 방법’과 중복되므로 그 설명에 부기하는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이 경우 대중매체를 구분하여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를 이용한 경우만 주요참작사유에 흡수하고, 영향력이 적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일반참작사유에 존치하자는 의견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를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넣은 것은 형사소송의 일반 입증책임원칙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위험성이 높은 경우’와 중복되어 2중평가를 받게 되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 유해성이 구성요건이 아닌 식품범죄의 경우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긍정적 요소로 고려되는 부당한 경우를 막기 위해 위 사유를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
- 소유형을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누락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
- 제시된 방안에서 허위표시유형과 부정의료행위유형에는 소유형을 주요참작사유로 기재하였는데, 유해식품유형에 넣지 않은 것은 각 양형인자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 부정의료행위 유형에서 ‘치료효과가 나타는 경우’가 불명확

하므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수정하여, ‘객관적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로 고치자는 의견

(2) 사기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고, 전화금융사기와 보험금사기는 제시된 방안처럼 행위태양과 범행수법에 따라 소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제시된 방안은 일반사기의 소유형 분류를 횡령배임과 같이 5단계로만 했는데, 사기는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를 하자는 의견
 -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차용금 사기와 그보다 죄질이 나쁜 그 외의 사기가 단순히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처벌정도가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제시된 방안처럼 5단계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
 - 일반사기 대유형에서,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범행’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시된 방안처럼 특별양형인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수피해자 등을 별도의 유형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피해금액과의 관계설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

(3)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제시된 초안이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II. 2팀 회의

1. 제26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10. 15.(금) 15:30 ~ 17:3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나. 참석자(3명)

- 서봉규(팀장), 김혜정, 정준화 전문위원

다. 주요 안건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관한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라. 회의 요지

(1)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관한 검토

-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수정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 현행 3단계 영역(감경/기본/가중)을 5단계 내지 7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의 살인범죄를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통합하여 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1/2(1 유형), 1/3(2, 3유형)로 감경하는 규정은 양형이 부당하게 낮게 설정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개별 살인범죄 유형 간 죄질 비교, 예를 들어 무차별 살인과 강간살인, 청부살인과 강간살인 중 어느 유형의 죄질이 더 나쁜지에 관하여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죄질 비교 및 평가 원칙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유기징역형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중징역형(예를 들어 징역 40년)이 어느 정도의 질적, 양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감형이나 가석방 요건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
- 살인범죄 유형분류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동기’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한데, 살인범죄에 있어서 동기뿐만 아니라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도 매우 중요하므로 ‘계획’만을 유형분류기준으로 삼거나, ‘동기’와 ‘계획’을 결합하여 유형분류기준으로 삼거나, ‘동기’, ‘계획’, ‘잔혹한 수법’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분류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동기’, ‘계획’, ‘수법’ 등 복수의 양형인자를 결합하여 유형분류기준으로 삼을 경우, 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고, 유형 간 죄질 비교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틀을 지나치게 훼손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실제 사례에 있어서 계획적 범행과 비계획적 범행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
- ※ 이와 관련하여 운영지원단에 최근 3년간 선고된 살인범죄 관련 판결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하기로 함

(2)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가액기준과 수량기준을 동시 적용할 경우, 하나의 사례가 복수의 유형에 포섭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액의 변동에 따라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액기준과 수량기준 중 한가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가액기준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실제 거래가격 등 다양하므로 객관적 가액기준이 무엇인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마약월보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필로폰은 가루로 되어 있으나, 알약으로 되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는데, 단순히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20g’이라고만 할 경우, 기준이 부정확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
 - 다양한 종류의 마약 전부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성도 높지 않으므로 필로폰 등 대표적 마약에 한정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투약사범에 ‘몰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매매, 수수 등의 행위는 일반 매매, 수수 등의 행위에 비하여 법정형이 훨씬 중하므로 단지 특별가중인자로만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수사협조’는 다른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데, 마약범죄에서의 수사협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약범죄에 있어서만 양형인자표에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중요한 수사협조’와 ‘보통의 수사협조’를 구분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마약사범이 보상금 수령을 염두에 두고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2. 제27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11. 1.(월) 15:00 ~ 16:3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나. 참석자(3명)

- 서봉규(팀장), 강우예, 정준화 전문위원

다. 주요 안건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관한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라. 회의 요지

(1)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관한 검토

- ‘살인범죄의 구체적 유형 예시 및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1~3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동기만으로는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동기와 계획성을 결합하여 유형을 구분할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성범죄의 형량범위에 비하여 살인죄의 형량범위가 낮은 편이므로 살인죄의 형량범위를 일정 부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1/2(1유형), 1/3(2, 3유형)로 감경하는 규정은 살인미수범죄의 형량이 부당하게 낮게 설정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살인과 강도살인의 유형구분이 쉽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

(2)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의견'에 관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III. 전체회의

1. 제30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10. 22.(금) 15:20 ~ 19: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나.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현석, 김혜정, 범현, 서봉규, 심재철, 정준

화, 조은경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제3차 공청회 주요 쟁점별 의견 정리
- 제4차 공청회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라. 회의 요지

(1) 제3차 공청회 주요 쟁점별 의견 정리

-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쟁점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범죄군 별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수렴되었거나 나누어졌음

(가)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쟁점		의견	
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양형기준안대로 유지하자는 다수의견	'다량의 문서 또는 반복적 위·변조 행위'로 수정하자는 개별 의견 제시됨

(나)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쟁점		의견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무허가(신고) 영업행위'의 포함 여부	단속법규위반의 행정법적 성격이 강하여 실형(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지 않고, 위해성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허가 영업행위는 중대 범죄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 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	국민 건강 및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양형실무에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의 포함 여부	제외하자는 의견	포함하자는 의견

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양형기준안대로 유지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짐	
------	-----------------	--------------------------	--

(다)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안

쟁점		의견		
양형인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의 1유형과 2유형 간 형량범위 차이	재물 취득행위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을 침해한 경우가 많고, 범행 착수 단계부터 유괴 목적 및 신체침해의 고의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끼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는 엄청나고, 재물을 요구했다가 반성해서 범행을 중지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재물 등 요구행위와 취득행위 사이에 형량범위의 차이를 양형기준안과 같이 두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	재물 요구행위인 제1유형의 형량범위가 재물 취득행위인 제2유형의 형량범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바, 유괴 시점부터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재물 요구행위를 한 경우가 재물 취득행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유형 사이에 형량범위의 차이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의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상태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양형인자 정의 규정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명시)’로 수정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기’의 경우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실제 취득한 재물 등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요구한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자의 자력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 하는 의견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 하고,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하되, 요구 가액과 취득 가액을 동일한 금액 으로 수정하는 방안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 하고,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하되,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

	<p>특별감경인자의 추가 여부</p>	<p>신체침해 또는 장기간 감금이 이미 가중 유형 및 인자로 반영되어 있어 중복평가의 문제가 있고, 양형인자의 가중치를 평가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안대로 유지하자는 다수의견</p>	<p>‘피해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해악을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데리고 있었던 경우’ 또는 ‘약취·유인의 상태가 매우 짧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p>	<p>‘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감경인자로서 여타 양형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배 또는 3배의 가중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p>
--	----------------------	---	---	--

(라)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쟁점		의견	
	<p>‘피해금액’의 반영 여부</p>	<p>일반재산과 특별재산의 대유형 구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방치물등 절도의 세부유형 구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세부유형 구분 등 유형분류에서 피해가액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고, 양형인자에서도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중한 경우’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p>	<p>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등 절도)과 제2유형(일반절도)에 관하여 피해가액을 기준으로 세부 유형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p>
<p>유형분류 및 형량범위</p>	<p>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4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p>	<p>1년~2년6월로 수정하자는 의견</p>	<p>초안대로 10월~2년 6월로 유지하자는 의견</p>
	<p>‘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의 절도’</p>	<p>제2유형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된 범죄인 점,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가 제2유형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안대로 제1유형에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p>	<p>‘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의 절도’에서 산업기술과 기업비밀을 분류하여, 기업비밀은 제1유형에, 산업기술은 제2유형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p>
	<p>상습·누범절도의 유형분류</p>	<p>특가법은 행위불법성이 높은 상습·누범 절도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므로 개별 절도 행위유형의 죄질 차이는 흡수되</p>	<p>상습·누범절도에서도 대인절도 및 침입절도의 상습범 또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인절도, 침입절</p>

		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과 범죄의 절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할 경우 전과를 과대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전과 범죄의 절도 유형과 당해 범죄의 절도 유형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세부 유형구분은 부적절하다 는 다수의견	도의 세부유형분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
양형인자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양형기준안대로 유지하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동종전과’	절도범죄의 ‘동종전과’에 ‘ 강도범죄의 전과 ’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양형기초자료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흉기휴대절도’만큼 형량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일반양형인자로 유지함 이 타당하다는 의견	‘흉기휴대’와 함께 특수절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흉기휴대’와 마찬가지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 이 타당하다는 의견
	‘야간 침입’ 또는 ‘손괴후 침입’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양형기준안대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미수범’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미수범’의 범죄태양이 다양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의견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지 말고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 ‘중지미수’를 특별감경인자로 , ‘장애미수’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2)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형법 제138조), 인권옹호직무방해(형법 제139조)는 빈도는 낮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공직

선거법 제244조 위반죄는 법정형이 높으므로 포함되어야 하고, 법정 또는 국회의원회장 모욕죄의 경우 별도의 중한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일반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와 동일한 형량범위를 설정한다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인권옹호직무방해죄나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죄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 법정 또는 국회의원회장 모욕(형법 제138조)을 경한 유형 또는 감경인자로 처리할 경우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중한 유형 또는 가중인자로 처리할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제외함이 바람직하며, 인권옹호직무방해(형법 제139조)는 범행의 주체가 경찰관이어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와는 성질을 달리하고, 발생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대상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죄의 경우 위 조항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5조, 제246조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집행 관련 범죄가 많으므로 형량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무집행방해범죄와 관련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양형기준에 포섭시킬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중대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만 포함시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손괴, 모욕 등이 발생한 경우도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손괴는 별도의 대유형인 공용물무효·파괴에서 포섭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모욕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만큼 중대한 형량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 이와 관련하여 운영지원단장이 공무집행방해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죄명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및 반영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단순 공무집행방해에 비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갈수록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점점 중요해 지므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 유형에 있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치료를 해 준다거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유형에 상관없이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면 충분하다는 의견

-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되, ‘치상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치상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에서만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만일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처리할 경우,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상해라는 이유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거나 그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2. 제31차 회의(워크숍 첫날)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11. 5.(금) 15:40 ~ 20:00

○ 장소 : 곤지암리조트

나.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현석, 김혜정, 범현, 서봉규, 심재철, 정준화, 조은경,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라. 회의 요지

(1)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V. 동기 및 목적에 따른 살인범행의 구체적 유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A유형이 다수를 살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B유형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B유형을 특별히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A유형 중 '우울감, 자괴감, 증오감이 쌓여 누군가를 살해하여 해소하려고 한 살인'이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
 - 중한 유형(예컨대 B유형)에서 계획적 살해와 우발적 살해는 본질적으로 달라 형량범위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같은 유형에 포섭하여 단순히 가중인자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별도의 세부 유형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
 - 동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각 유형에서 계획적 살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현행 양형기준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하고, 중한 유형의 가중영역에서 형량범위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거나 때로는 상한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규정할 경우 계획·우발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C-1 유형(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므로 이를 C유형에서 분리하여 B유형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B유형의 각 범죄는 동기 및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범죄유형이 아니므로 원래 속한 범죄군으로 환원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15년 이상 선고할 사안들을 죄질의 상대적 경중을 비교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모두 끌어 모아 죄질 및 형량을 비교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
 - 수법, 계획성 등도 중요한 양형인자인데 동기 내지 목적만을 가지고 유형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유기징역형 상한이 상향조정된 이상, 단일한 유형분류 기준만으로는 넓어진 형량범위를 채우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동기’라는 단일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와 유사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목적’까지 포함한 유형분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A, B, C, D유형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이 모두 가능한 범죄유형이므로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모두 열어두는 쪽으로 배치를 하여 각 유형마다 죄질이 나쁜 경우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동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현행 3가지 살인범죄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아래에 특수살인으로서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로 다수를 살해한 경우’의 2개의 특수한 살인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3유형에 포섭된 살인범죄 중 가중영역에 대하여 15년에서 50년까지의 형량범위를 어떻게 규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되므로 살인범죄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간 죄질을 상호 비교한 다음 그루핑화의 과정을 거쳐 개념을 추출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A, C, D유형은 현행 살인죄 양형기준의 3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 유형이므로 3유형을 유지하면서 A유형을 별도로 추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
- 계획성을 기준으로 murder와 manslaughter를 구분하여 법정형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두는 영미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형법은 계획범과 비계획범을 구분하지 않고, 양형실무에서도 동기를 계획성이나 범행수법보다 중시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형분류를 해야 한다는 의견
- 동기 및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살인죄에 있어서 범행수법 역시 중요한 양형인자이므로 동기 및 목적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개별 유형 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살인을 별도 유형으로 구성하여 3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
-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불확실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행위자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 평가이므로 유형분류 기준 또는 양형인자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 재범의 위험성과 관

련된 인자(전과, 계획적 범행, 반성 없음, 잔혹한 범행수법)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다시 범죄유형 분류기준으로 삼는 것은 중복평가일 수 있고, 폭력범죄와 달리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 ‘VI. 살인범죄 유형분류방안’과 관련하여 다수 의견은 제2안(5개 유형 분류안)이었는데, 세부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이 제시됨

- A유형을 좀 다듬어서 B~I유형 중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추출하여 A유형에 넣고, A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빼서 하나의 유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유형별 구체적 사례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2, 3, 4, 5유형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H유형을 1유형에 포함시킬지, 2유형에 포함시킬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2)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 특별법에 규정된 다양한 공무방해 관련 범죄들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본유형에 비슷한 종류 및 수준의 특별법상 공무방해범죄에 적용한다는 방식으로 서술식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특별법상 공무방해 관련 행위 태양 및 법정형이 너무나 다양하고,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양형인자표도 동일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도 별로 없어 형량의 통계분석도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포함시킬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개인 간의 상해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상해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에 포섭시키자는 의견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법익의 침해가 훨씬 중대하게 평가되므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3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3기 양형위원회에서 상해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중한 상해는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거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무집행방해죄에 수반되는 범죄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상해만 포함시킬 경우 재물 손괴 등을 제외하는 근거가 모호하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폭처법상 집단 또는 흉기 휴대 상해(징역 3년 이상), 집단 또는 흉기 휴대 체포·감금(징역 2년 이상), 집단 또는 흉기 휴대 폭행·협박·손괴(징역 1년 이상) 등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쉽지 않다는 의견

○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① 공무집행방해, ② 공용물무효·과과, ③ 특수공무방해치상·치사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③ 특수공무방해치상·치사 유형 중 치사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그 외의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①, ②, ③ 유형에서, 중한 상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경미한 상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①, ②, ③ 유형에서, 중한 상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중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중하지 않은 상해를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할 경우, 중한 상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중하지 않은 상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② 유형에서 무효·파괴된 재물의 피해 회복을 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② 유형에서 무효·파괴된 재물의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관련하여 초안과 같은 범위로 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보험금사기를 일반사기에 포함시키고, ‘일반사기’와 ‘조직적,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의 2개 유형으로 대유형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보험금사기에서는 편취금액의 영향력보다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므로 별도의 유형 분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금액보다 기망 태양에 따라 세부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주도자적 지위’와 ‘가담자적 지위’는 정범, 공범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다른 범죄군에서는 양형인자로 반영하

- 고 있음에도 사기범죄에서만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
- 전화금융사기와 보험금사기 유형에서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보험금사기 유형에서 1, 2, 3, 4유형 중 일부를 통합하여 세부 유형의 개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특수사기가 일반사기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적음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 오히려 일반사기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지므로 특수사기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고액인 경우에 유형을 신설하거나 서술식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일반사기의 피해금액에 따른 형량기준에 대입하였을 때, 전화금융사기의 선고형이 훨씬 높으므로 피해금액보다 중요한 주도자·가담자적 지위에 따른 형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사기범죄의 형량범위를 횡령·배임범죄의 형량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횡령·배임범죄의 형량기준은 단순 횡령·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배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현실적 이득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이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사기범죄의 형량범위를 더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설사 기본 범죄(사기, 공갈, 횡령·배임)의 법정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특경법에서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 되면 상습범까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고액이 되면 개별 범죄의 질적 차이보다 피해액을 더 중시하라는 것이 입법취지로 해석되므로 피해액이 고액이면, 횡령·배임, 일반 사기, 전화금융 사기의 형량범위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피고인이 일반사기와 특수사기를 한 경우 합산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만약 실무에서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사례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감경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의견
- 거래에 있어서 기망의 목적이 신용인가, 신용 이외의 다른 것인가에 따라 속성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소제기시에 기망의 대상이 특정되어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의견
- 일반사기 중 차용금사기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경우 감경영역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를 감경인자로 배치한 것이라는 의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와 ‘소극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인 경우이거나 처음에는 기망행위가 아니었던 경우’를 통합해서 하나의 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다)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관련하여 사문서 부정행사죄를 제외하기로 하는 1팀회의 논의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3. 제32차 회의(워크샵 둘째날)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11. 6.(토) 10:00 ~ 11:40

- 장소 : 곤지암리조트

나.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혜정, 범현, 서봉규, 심재철, 이상원, 정준화, 조은경,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집행유예기준 개선방안 검토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라. 회의 요지

(1) 집행유예기준 개선방안 검토

-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일반예방 및 법질서 방위 차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중요하므로 범죄 유형별 주요 부정사유의 선별화, 복수화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중시해서 주요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범행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특별양형인자에 반영되어 있고, 집행유예기준의 주요참작사유는 특별양형인자를 대부분 반영한 형태이므로 범행의 중대성 요소가 집행유예기준의 주요참작사유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
 - 범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특별가중인자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중한 유형(예 : 절도범죄에서 침입절도 유형)은 그 자체로 주요부정사유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 중한 유형 내에서도 감경인자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집행유

예가 가능한 사안이 있으므로 중한 유형 자체를 주요부정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중한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를 주요부정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형량기준과 집행유예기준을 논리적으로 구분한 이상, 범행의 중대성은 형량을 정하는 데만 사용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말고,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 형량기준과는 달리 행위자 측면을 중시해야 하는 집행유예기준에서 미리 고정된 주요참작사유의 개수 차이만으로 실형/집행유예를 권고하도록 하는 현행 집행유예기준은 개별사건에서 특유한 참작사유를 모두 추출해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 각 범죄유형마다 실형을 권고함이 타당한 핵심적인 사유를 몇 가지 추출한 후 예시적으로 조합(예 : 1억원 이상 편취한 후 합의하지 않은 경우)하여 그에 해당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원칙을 2~3개 정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위와 같은 방식은 선형적으로 집행유예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어 실무에 적용하였을 때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해 주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요소는 이미 주요참작사유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좀 더 객관적으로 의미있는 인자들을 찾아내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2)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각 유형별 행위가 어느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적용법조 및 대상행위를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영업범·상습범의 경우 마약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관련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범의 경우 별도의 유형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제조·밀수사범 유형에서 원료물질·원료식물 등 관련 범죄의 경우 중독성이 낮은 원료물질이 2, 3유형에 포섭되어 있는 등 세부 유형의 해당 범죄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제시된 형량범위가 현행 양형실무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적극적 수사협조’의 경우에 형량범위의 1/2 또는 1/3로 감경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 ‘적극적 수사협조’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정도만으로 규정해서는 부족하므로 좀 더 큰 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매매 등 유통사범 유형에서 수량기준, 가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 개별 마약 간 수량기준 비율(예 : 필로폰 20g-엑스터시 250정-대마 3kg-해쉬시 100g)을 정하는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
- 마약범죄의 형량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자는 행위 태양, 종류, 수량이라는 의견
- 대유형은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소유형은 마약의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양형인자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량의 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그에 미달하면 감경인자, 그를 초과하면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적극적 수사협조’, ‘중대한 수사협조’, ‘보통의 수사협조’의 개념 구분이 모호하여 구체적 사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 마약범죄에 있어서 피고인과 레벨이 비슷하거나 아랫선과 같은 투약사범에 대한 제보는 ‘사소한 수사협조’이고, 피고인의 윗선 즉 밀수책이나 제조책 또는 완전히 다른 마약범죄에 관한 제보를 하여 압수 등 성과를 올리게 하는 것이 ‘중대한 수사협조’에 해당한다는 의견
-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능력과 관련 있고, 수사기관의 의견만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판절차에 있어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 부담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제보한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계류 중이라면 그 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사협조’를 명시적인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32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9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